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616호 2023. 1. 4. (수)

【고 시】

- 정선군 고시 제2022-163호 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소로3-26호선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.....1
- 정선군 고시 제2022-164호 정선 군관리계획(도로,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.....3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22-1458호 군계획시설사업(수도공급설비:여량정수장)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.....17
- 정선군 공고 제2022-1461호 군계획시설사업(수도공급설비:덕송통합정수장)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.....20
- 정선군 공고 제2022-1470호 군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..23

- 정선군 공고 제2022-1486호 정선군 골프연습장 CCTV 설치·운영을 위한 행정예고.....26
- 정선군 공고 제2022-1492호 정선 군계획시설사업(노외주차장) 공사 완료 공고.....29
- 정선군 공고 제2022-1493호 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사업(소로2-19호선) 공사 완료
공고.....30
- 정선군 공고 제2022-1495호 정선 군관리계획(고한리·사북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(안) 공람·공고.....31
- 정선군 공고 제2022-1506호 2025년 정선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 및 전략
환경영향평가(초안) 주민공람·공고.....33
- 정선군 공고 제2022-1511호 정선(남면) 군계획시설사업(중로3-F1호선) 공사 완료
공고.....35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관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고 시

정선군 고시 제2022-163호

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소로3-26호선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정선군 고시 제2021-93호(2021. 7. 9.)로 최초 결정된 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소로 3-26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30일

정 선 군 수

가. 위 치 :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93-9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소로3-26호선) 공사
- 2) 명 칭 : 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소로3-26호선) 개설공사(여량농협 나전지점 인근)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결정		실시계획인가	비 고
	세부시설명	연장·폭원	금회 변경 시행	
도 로	소로 3-26호선	L=119m, B=5.0m	L=81.6m, B=5.0m	

라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- 1) 성 명 : 정선군수(북평면장)
- 2)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6

마. 사업기간

- 1) 기 정 : 2022. 11. 25. ~ 2022. 12. 31.

2) 변 경 : 2022. 11. 25. ~ 2023. 6. 31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불임

자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◎ 토지조서

순 번	위 치	지 번	지 목	면 적 (㎡)		소 유 자		이해관계인		
				공부	편입	주소	성명	관계인	성명	소유권이 외의 종류 및 내 용
1	북평면리 북평리	665-7	도	1,956.7	38		정선군	-	-	-
2	"	690-14	대	112.0	3		정선군	-	-	-
3	"	693-9	전	374.4	356		정선군	-	-	-
계				2,443.1	397					

정선군 고시 제2022-164호

정선 군관리계획(도로,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- 1. 정선 군관리계획(도로,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,
-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- 3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2년 12월 30일

정 선 군 수

가. 결정(변경) 취지 : 사북 동탄 ~ 선명APT 일원 연결 도로 및 사북장학센터 일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, 낙후된 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도로시설 및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함

나. 건 명 : 정선 군관리계획(도로,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다. 위 치 :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원

라. 규 모

1) 도로시설 : 변경 2개소, 폐지 2개소

(변경) 중로 2-10호선 L=945m → 962m 증) 17m

(변경) 중로 2-1호선 L= 15m → 211m 증) 196m, B=7~8m → 6~8m 감) 1m

(폐지) 중로 3-9호선, (폐지) 소로3-1호선

2)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: 주차장 1개소 신설

(신설) 주차장 24호 A=633㎡

마. 정선 군관리계획(도로,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조서 : 별첨조서 참조

바. 정선 군관리계획(도로,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도 : 실음 생략

정선 군관리계획(도로,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I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 : 도로) 결정(변경)

1.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2	10	15	집산 도로	945	중로2-2 사북리72-5임	사북리 산153-24임	일반 도로	-	정선고83호 (09.6.5)	
변경	중로	2	10	15	집산 도로	962	중로2-2 사북리72-5임	사북리 산153-24임	일반 도로	-	정선고83호 (09.6.5)	
폐지	중로	3	9	12	국지 도로	118	중로2-10 사북리300-13대	소로2-1 사북리300-13대	일반 도로	선명2차 APT	건고138호 (78.6.8))	
기정	소로	2	1	7~8	국지 도로	15	중로3-9 사북리300-13대	소로3-1 사북리299-1도	일반 도로	선명2차 APT	강고26호 (79.2.8)	
변경	소로	2	1	6~8	국지 도로	211	중로2-10 사북리299-1도	사북APT 사북리303대	일반 도로	선명2차 APT	강고26호 (79.2.8)	
폐지	소로	3	1	6	국지 도로	191	소로2-1 사북리299-1도	사북APT 사북리303대	일반 도로	선명2차 APT	강고26호 (79.2.8)	

2.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중로 2-10	중로 2-10	◦ 선형 변경 및 연장증가 - B=15m, L=945m→962m 증)17m	◦ 사북읍 선명아파트 일원 시가지 접근성 용이 및 교통량 분담 등 원활한 교통체계 형성을 위한 도로 선형 일부 변경
중로 3-9	-	◦ 노선 폐지 - 중로2-10호선과 합병	◦ 중로2-10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도로 합병
소로 2-1	소로 2-1	◦ 연장 및 가각부 변경 - B=7~8m → 6~8m, 감)1m - L=15m → 211m, 증) 196m	◦ 중로2-10호선 변경 및 소로3-1호선 합병에 따른 폭원·연장 및 접속부 가각 변경
소로 3-1	-	◦ 노선 폐지 - 소로2-1호선과 합병	◦ 교통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소로2-1호선과 합병

Ⅱ. 정선 군관리계획(사북리3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1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 : 주차장) 결정(변경)

가. 주차장

1)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24	노외주차장	사북읍 사북리 344-52대 일원	-	증) 633	633	금회	사북3지구

2)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24	노외주차장	◦주차장 신설 - A=633m ²	◦ 사북리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시설 신설

2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③	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	사북읍 사북리 344-2대 일원	96,779	-	96,779	강고 제77호 (2002.4.8)	

3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: 변경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계	제2종일반주거	일반상업	자연녹지	보전녹지
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	96,779	29,081	63,835	1,251	2,612

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가. 도로

1) 도로 결정(변경) 총괄표

구 분	합 계		1류		2류		3류	
	노선수	연장(m)	노선수	연장(m)	노선수	연장(m)	노선수	연장(m)
합계	12	2,588	2	418	2	309	8	1,861
대로	1	106	-	-	-	-	1	106
중로	2	1,068	-	-	1	165	1	903
소로	9	1,414	2	418	1	144	6	852

2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3	1	25	보조간 선도로	106	중로 2-2 사북리 305-8대	중로 3-1 사북리 산77-3도	일반 도로	범바위골 진입부	강고173호 (78.12.7.)	
기정	중로	2	3	15	보조간 선도로	1,720 (165)	대로 3-1 사북리 305-4도	사북구역계 사북리 452-36도	일반 도로	사북여중	강고26호 (79.2.8)	
기정	중로	3	2	7~12	보조간 선도로	903	대로 3-1 사북리 산77-2도	중로 3-1 사북리 366-12도	일반 도로	사북교	건고194호 (76.12.7)	
기정	소로	1	20	10	국지 도로	336	중로 3-2 사북리 452천	중로 3-2 사북리 372-11도	일반 도로	지장천	강고26호 (79.2.8)	
기정	소로	2	51	8	국지 도로	144	중로 3-2 사북리 307-28대	소로 1-24 사북리 307-1도	일반 도로	-	강고26호 (79.2.8)	
기정	소로	1	24	10~12	국지 도로	499 (82)	소로 1-3 사북리 452천	소로 2-53 사북리 산143-11입	일반 도로	-	강고26호 (79.2.8)	
기정	소로	3	29	6	국지 도로	227	소로 1-1 사북리 344-133대	중로 3-2 사북리 344-67대	일반 도로		강고300호 (03.12.13)	
기정	소로	3	33	6~7	국지 도로	91	중로 3-2 사북리 317-35대	소로 3-29 사북리 317-252도	일반 도로	사북읍 사무소	강고26호 (79.2.8)	
기정	소로	3	34	6	국지 도로	68	중로 3-2 사북리 344-55대	소로 2-53 사북리 344-169대	일반 도로	-	정선고25호 (2016.4.15.)	
기정	소로	3	37	4.5~6	국지 도로	202	중로 3-2 사북리 317-62대	소로 3-32 사북리 317-166대	일반 도로	-	정선고16호 (2016.3.4.)	
기정	소로	3	38	6	국지 도로	63	중로 3-2 사북리 317-266대	소로 2-53 사북리 313-47대	일반 도로	-	정선고16호 (2016.3.4.)	
기정	소로	3	39	4~6	국지 도로	201	중로 3-2 사북리 317-131주	소로 3-33 사북리 317-262대	일반 도로	-	정선고16호 (2016.3.4.)	

* () 내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

나. 주차장

1)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-	-	-	3,074	증)633	3,707	-	
기정	㉔	구 사북초교 앞 주차장	사북읍 사북리 345-1전	1,160	-	1,160	정선고 제2016-25호 (2016.4.15.)	
기정	㉕	사북읍사무소 남 주차장	사북읍 사북리 317-36대 일원	612	-	612	정선고 제2016-25호 (2016.4.15.)	
기정	㉖	사북읍사무소 북 주차장	사북읍 사북리 317-169대 일원	1,302	-	1,302	정선고 제2016-25호 (2016.4.15.)	
신설	㉗	노외주차장	사북읍 사북리 344-52대 일원	-	증)633	633	금회	

2)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신설	㉗	노외주차장	◦주차장 신설 - A=633m ²	◦ 사북리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시설 신설

다. 녹지

1)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m ²)			최 초 결정일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①	중로2-1호선변 완충녹지	완충 녹지	사북읍 사북리 344-153 일원	26,708 (3,912)	-	26,708 (3,912)	강고 제83호 (2002.4.15)

라. 하천

1) 하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		연장 (km)	폭원 (m)	폭원 (m ²)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				
기정	㉘	하천 (북일천)	소하천	사북읍 사북리 18번지 일원	사북읍 사북리 306-6번지 일원	-	5.6	9~ 20	110, 183 (2,361)	정선군고시 제2016-25호 (2016.4.15.)	

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1) 가구 및 획지 계획

가. 단위대지 규모

구분	시설명	계획내용	비고
기정	주 거 지 역	◦최소개발규모 : 60㎡, 최대개발규모 : 1,000㎡	
	상 업 지 역	◦최소개발규모 : 150㎡, 최대개발규모 : 2,000㎡	
	공 동 건 축	◦공동건축(규제 또는 권장)등이 표시된 경우 그에 합당하게 건축	

나. 공동건축

구분	시설명	계획내용	비고
기정	◦공공건축을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필지의 경우 ◦일부 맹지형 필지	◦필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◦여러개의 필지에 1개의 건축물이 입지한 경우	

다. 대지분할가능선

구분	대지분할가능선	비고
기정	◦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 할 수 있는 위치 지정	

라. 특별계획구역

구분	위치	계획내용	비고
A10	사북읍사북리 354-1대 일원	◦8m도로를 계획하여 연계통로 확보하여 기부체납 ◦대상지 남측에 접하는 중로3-13호선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내로 폭원 4m의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조성 추가확보되는 도시계획도로(B=4m)는 기부체납 ※ 용적률은 기준 500%, 허용 600% 층수는 15층(53m)이하, 건폐율 80%, 불허용도1, 권장용도A로 규제함 ※ 전면으로는 10m의 건축한계선을, 대상지 좌측2m 건축한계선을 계획함 - 단,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획지별 단일건축물로 일괄개발만 허용토록 한다.	

2) 가구 및 획지 계획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가구 번호	기정면적 (㎡)	획 지		증·감 (㎡)	비고
			위 치	변경면적(㎡)		
합 계		75,930	-	75,930	-	-
기정	C1	2,632	사북읍 사북리 346-1번지 일원	2,632	-	-
기정	C2	2,919	사북읍 사북리 344-45번지 일원	2,919	-	-
기정	C3	12,316	사북읍 사북리 344-4번지 일원	12,316	-	-
기정	C4	4,516	사북읍 사북리 344-17번지 일원	4,516	-	-
기정	C5	1,683	사북읍 사북리 345-4번지 일원	1,683	-	-
기정	C6	12,237	사북읍 사북리 344-67번지 일원	12,237	-	-
기정	C7	8,222	사북읍 사북리 317-191번지 일원	8,222	-	-
기정	C8	13,650	사북읍 사북리 317-108번지 일원	13,650	-	-
기정	C9	5,118	사북읍 사북리 317-64번지 일원	5,118	-	-
기정	C11	4,690	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	4,690	-	-
기정	C12	866	사북읍 사북리 산72-12번지 일원	866	-	-
기정	C13	456	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	456	-	-
기정	C14	3,269	사북읍 사북리 344-133번지 일원	3,269	-	-
기정	C17	3,356	사북읍 사북리 313-11번지 일원	3,356	-	-

5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
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1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
계획

가. 불허용도

구분	건물전체 불허용도	1층 전면 불허용도
1 일반 상업 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◦자동차관련시설 (단, 주차장 제외) ◦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◦창고시설(100㎡이상) ◦공장 ◦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(단,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) ◦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◦학교보건법 제6조,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{단,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}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간이공작소 (목공소, 철공소, 알루미늄 공작업등)
2 고한 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◦창고시설(100㎡이상) ◦공장 ◦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	◦상 동
3 일반 주거 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자동차관련시설 (단, 주차장 제외) ◦창고시설(100㎡이상) ◦공장 ◦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(단,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) ◦학교보건법 제6조,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{단,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} 	◦상 동

나. 권장용도

구분	권장용도	비고
A	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 의한 위락시설	◦전층 권장용도
B	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	◦전층 권장용도
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-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- 휴게음식점 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- 일반음식점 - 휴게음식점 	◦1층 권장용도
D	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- 도·소매시장 - 상점	◦전층 권장용도
E	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업무시설	◦전층 권장용도

다. 건폐율

구분	건폐율	비고
일반주거지역	◦60% 이하	
일반상업지역	◦80% 이하	

라. 용적률

1) 용적률 계획

구분	권장용도		비고
	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
중심지 형성지역	400%~500%	500%~600%	사복시장 및 사복역세권 주변
기타 상업지역	300%~400%	350%~500%	-
주거지역	150%~200%	200%~250%	(구)사복초등학교 주변

2) 용적률 완화적용(Incentive)에 관한 계획

구분			완화기준	비고
허용용적률	공동건축	규제사항	◦30%	
		권장사항	◦40%	
	경사지붕의 처리		◦20%	
	경사지붕색채		◦10%	
	건축한계선		◦(조성면적÷총대지면적)×기준용적률	
	전층권장용도		◦(권장용도 누계면적÷총지상연면적)×기준용적률×1.5	
	1층권장용도		◦(지상접지층 권장용도면적÷총지상연면적)×기준용적률×1.5	
	공개공지		◦{(조성면적-설치의무면적)÷총대지면적}×기준용적률×1.5	
	전면공지		◦{(조성면적-설치의무면적)÷총대지면적}×기준용적률×1.5	
	공동주차장 조성		◦기준용적률×0.1	
상한용적률			◦시행지침 제11조 4항 참조	

주: '경사지붕의 처리' 와 관련한 완화기준은 시행지침 제32조에 의한 경사지붕처리 조항의 ①항 권장사항을 준수하였을 경우 적용

마. 높이

구분	최고높이	비고
중심지 형성지역	12층 이하	-
기타 상업지역		
주거지역		

바. 배치

구분	계획내용	비고
건축한계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◦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하는 대지의 공지는 담장, 계단, 화단, 환기구,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음 ◦건축선 후퇴부분은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처리하며, 보도와 동일한 포장, 또는 장식포장이 되도록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 	

구분	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비고
기정	C6	사북읍 사북리 344-67번지 일원	용 도	◦불허용도 1	
			건 폐 율	◦80%	
			용 적 륜	◦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 이	◦12층(42m)이하	
			배 치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건 축 선	◦보차혼용통로, 전면도로에서 1m	
기정	C7	사북읍 사북리 317-191번지 일원	용 도	◦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C	
			건 폐 율	◦80%	
			용 적 륜	◦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 이	◦12층(42m)이하	
			배 치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건 축 선	◦보차혼용통로, 전면도로에서 1m	
기정	C8	사북읍 사북리 317-108번지 일원	용 도	◦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C	
			건 폐 율	◦80%	
			용 적 륜	◦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 이	◦12층(42m)이하	
			배 치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건 축 선	◦보차혼용통로 및 전면도로에서 1m	
기정	C9	사북읍 사북리 317-64번지 일원	용 도	◦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C	
			건 폐 율	◦80%	
			용 적 륜	◦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 이	◦12층(42m)이하	
			배 치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건 축 선	◦보차혼용통로, 전면도로에서 1m	
기정	C11	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	용 도	◦불허용도 1	
			건 폐 율	◦80%	
			용 적 륜	◦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 이	◦12층(42m)이하	
			배 치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건 축 선	◦해당사항 없음	

구분	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비고
기정	C12	사북읍 사북리 산72-14번지 일원	용 도	◦불허용도 1	
			건 폐 율	◦80%	
			용 적 륜	◦기준 : 450% 허용 : 550%	
			높 이	◦12층(42m)이하	
			배 치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건 축 선	◦보차혼용통로, 하천경계부터 4m	
기정	C13	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	용 도	◦공개공지	
			건 폐 율	◦해당사항 없음	
			용 적 륜	◦해당사항 없음	
			높 이	◦해당사항 없음	
			배 치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건 축 선	◦해당사항 없음	
기정	C14	사북읍 사북리 344-133번지 일원	용 도	◦불허용도 1	
			건 폐 율	◦80%	
			용 적 륜	◦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 이	◦12층(42m)이하	
			배 치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건 축 선	◦해당사항 없음	
기정	C17	사북읍 사북리 313-11번지 일원	용 도	◦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C	
			건 폐 율	◦80%	
			용 적 륜	◦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 이	◦12층(42m)이하	
			배 치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◦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건 축 선	◦보차혼용통로, 전면도로에서 1m	

6.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1)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내용

가.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공개공지	◦위치 및 조성 면적, 최소폭원 확보 및 인접대지와와의 연계 조성	◦대형필지

나. 경관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건축물 외벽처리	◦주변경관과 조화된 형태 및 재료사용 권장	
옥외광고물	◦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가로경관 고려 ◦지주형 간편의 설치제어 지침 제시 ◦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·표시금지 ◦판류형 간편은 원색사용 지양	
색채	◦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유도	
1층부 형태	◦개구부 통일성 유지 ◦투시형 서터 권장	
조명	◦가로경관 수준 향상 및 야간 경관 증진 ◦건축물의 외벽 조명 설치 권장	
경사형 지붕	◦계획대상지 가로경관 증진과 옥상 경관 향상 ◦옥상면적의 일부 경사지붕 처리 (권장) - 주거용도 : 옥상 전체면적의 30% 이상 - 상업용도 : 옥상 전체면적의 40% 이상 - 공공용도 : 옥상 전체면적의 50% 이상	
투수성 포장	◦투수성 포장재 : 흙, 잔디, 자갈, 기타 투수성 포장재 ◦전체 포장면적의 70% 이상을 투수성 포장 권장	

다.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차량 진출입 불허구간	◦간선도로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	
공동주차 출입구	◦주차통로의 확보가 어려운 간선도로변 대지	
보차혼용통로	◦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 확보 ※ 공동건축이행 또는 자율적인 분할·합병이 이루어져 보차혼용통로의 변경이 요구될 시에는 정선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	

2)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구분	도면 번호	위치	계획내용	비고
기정	C1	사북읍 사북리 346-1번지 일원	◦보차혼용통로(B=4m)	
변경	C2	사북읍 사북리 344-45번지 일원	◦보차혼용통로(B=3m), 공개공지	주차장24 신설 및 현황도로 반영 하여 보차혼용통로 위치 변경 (우측으로 1.5m 이동)
기정	C3	사북읍 사북리 344-4번지 일원	◦해당사항 없음	
기정	C4	사북읍 사북리 344-17번지 일원	◦공개공지	
기정	C5	사북읍 사북리 345-4번지 일원	◦해당사항 없음	
기정	C6	사북읍 사북리 344-67번지 일원	◦보차혼용통로(B=4m, 3m)	
기정	C7	사북읍 사북리 317-191번지 일원	◦공동주차출입구	
기정	C8	사북읍 사북리 317-108번지 일원	◦보차혼용통로(B=4m)	
기정	C9	사북읍 사북리 317-64번지 일원	◦보차혼용통로(B=2m), 공동주차출입구	
기정	C11	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	◦해당사항 없음	
기정	C12	사북읍 사북리 산72-14번지 일원	◦보차혼용통로(B=4m)	
기정	C13	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	◦공개공지	
기정	C14	사북읍 사북리 344-133번지 일원	◦해당사항 없음	
기정	C17	사북읍 사북리 313-11번지 일원	◦보차혼용통로(B=4m), 공동주차출입구	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22-1458호

군계획시설사업(수도공급설비:여량정수장)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

1. 정선군 고시 제2010-096호(2010. 7. 9.)로 최초 결정된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수도공급설비)에 대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2.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23일

정 선 군 수

가.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202-1 외 4필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수도공급설비)
- 2) 명 칭 : 여량정수장 현대화사업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시설 결정		실시계획 인가	비 고
	세부시설명	규 모	금회시행	
수도공급설비	여량정수장	A=5,948㎡	A=5,912㎡(Q=1,000㎥/일)	

라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- 1) 성 명 : 정선군수(상하수도사업소장)
- 2)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

마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5.12.31

바. 공람기간 : 게재일로부터 14일(2022. 12. 23. ~2023. 1. 6.)

사. 공람장소 : 정선군 도시과(033-560-2132)
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
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불임

자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● 토지조서

연 번	위치	지번	지목	면 적 (㎡)		소 유 자		이해관계인		
				공부	편입	주소	성명	관계인	성명	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
1	여량면 유천리	202-1	수도	3,722	3,722	정선군				
2	여량면 유천리	202-2	수도	313	313	정선군				
3	여량면 유천리	209	묘	575	575	정선군				
4	여량면 유천리	207-1	수도	119	119	정선군				
5	여량면 유천리	208	전	1,183	1,183	정선군				
계				5,912	5,912					

정선군 공고 제2022-1461호

군계획시설사업(수도공급설비:덕송통합정수장)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

- 1. 정선군 고시 제2022-033호(2022. 2. 18.)로 최초 결정된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수도공급설비)에 대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- 2.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23일

정 선 군 수

가.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03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수도공급설비)
- 2) 명 칭 : 덕송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시설 결정		실시계획 인가	비 고
	세부시설명	규 모	금회시행	
수도공급설비	덕송통합정수장	A=11,046㎡	A=11,046㎡(Q=6,700㎡/일)	

라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- 1) 성 명 : 정선군수(상하수도사업소장)
- 2)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

마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5.12.31

바. 공람기간 : 게재일로부터 14일(2022. 12. 23. ~2023. 1. 6.)

사. 공람장소 : 정선군 도시과(033-560-2132)
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
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불임

자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● 토지조서

연 번	위치	지번	지목	면 적 (㎡)		소 유 자		이해관계인		
				공부	편입	주소	성명	관계인	성명	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
1	정선읍 덕송리	628-1	전	722	722	정선군				
2	정선읍 덕송리	628-3	잡	475	475	정선군				
3	정선읍 덕송리	529-2	잡	1,369	1,369	정선군				
4	정선읍 덕송리	630	잡	1,471	1,471	정선군				
5	정선읍 덕송리	630-1	잡	598	598	정선군				
6	정선읍 덕송리	630-2	전	1,267	1,267	정선군				
7	정선읍 덕송리	630-3	전	400	400	정선군				
8	정선읍 덕송리	631	잡	1,502	1,502	정선군				
9	정선읍 덕송리	631-1	전	3,242	3,242	정선군				
계				11,046	11,046					

정선군 공고 제2022-1470호

군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

- 1. 강원도 고시 제1973-2577호(1973. 12. 26.)로 최초 결정된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에 대하여 군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
- 2.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23일

정 선 군 수

가.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9-66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도로)
- 2) 명 칭 : 고한 소3-11호(상갈래) 군계획시설 개설공사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시설 결정		실시계획 인가	비 고
	세부시설명	규 모	금회시행	
도로	소(국)3-11	L=242m, B=6m	L=165m, B=6m	

라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- 1) 성 명 : 정선군수(도시과장)
- 2)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
마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4. 5. 31

바. 공람기간 : 게재일로부터 14일(2022. 12. 23. ~2023. 1. 6.)

사. 공람장소 : 정선군 도시과(033-560-2132)
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
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불임

자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● 토지조사

연 번	위 치	지 번	지 목	면 적 (㎡)		소 유 자		이 해 관 계 인		
				공 부	편 입	주 소	성 명	관 계 인	성 명	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의 종 류 및 내 容
1	고한읍 고한리	29-55	대	68	20		건교부			
2	"	29-48	대	26	2		건교부			
3	"	29-33	대	37	4		국토부			
4	"	29-49	대	117	90		건교부			
5	"	29-50	대	18	3		건교부			
6	"	29-66	대	45	35		정선군			
7	"	29-67	대	77	62		정선군			
8	"	29-3	대	240	2		강원도			
9	"	29-68	대	68	55		정선군			
10	"	29-69	대	16	12		정선군			
11	"	31-8	도	28	24		기재부			
12	"	31-9	도	83	1		기재부			
13	"	30-12	임	453	1		정선군			
14	"	30-18	임	36	30		정선군			
15	"	30-16	대	3	1		장*영			
16	"	30-19	임	99	86		정선군			
17	"	30-15	임	166	145		정선군			
18	"	30-1	임	102	35		정선군			
19	"	274-302	천	86	35		정선군			
20	"	274-301	천	134	128		정선군			
21	"	274-116	대	84	71		정선군			
22	"	274-303	대	79	71		정선군			
23	"	274-4	천	13132	15		건설부			
24	"	274-304	대	67	61		정선군			
25	"	274-305	대	122	102		정선군			
26	"	274-306	대	116	2		정선군			
계				15,502	1,093					

정선군 공고 제2022-1486호

정선군 골프연습장 CCTV 설치·운영을 위한 행정예고

시설안전 및 화재,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정선군 골프연습장 CCTV 설치와 관련,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,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 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22일

정 선 군 수

1.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

정선군 골프연습장 이용자의 안전관리,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설안전, 화재, 범죄 등을 사전 예방하여 시설물을 안정 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2. 관련근거

- 가.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나.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다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라.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3. 사업개요

- 가. 사 업 명 : 정선군 골프연습장 CCTV 설치·운영
- 나. 시 행 자 : 정선군(문화관광과)
- 다. 설치장소 :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768번지 일원(정선종합경기장 내)
- 라. 설치대수 : CCTV 21대

설치장소	촬영장소	대수	비고
정선군 골프연습장 (총 21대)	지상 1층 주차장	8	신규
	지상 1층 로비	2	신규
	지상 2층 통로, 로비	5	신규
	지상 3층 통로, 로비	5	신규
	엘레베이터	1	신규

4. 공고개요

- 가. 공고기간 : 2022. 12. 22. ~ 2023. 01. 11.(20일간)
- 나. 공고방법 : 정선군청 홈페이지(<http://www.jeongseon.go.kr>)

5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문화관광과로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제출기한 : 2022. 12. 22. ~ 2023. 01. 11.(20일간)
- 나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(기한 내 도착분까지 유효), 팩스
- 다. 제출처 : 정선군 문화관광과
 - 우 편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(정선군청 문화관광과)
 - 전 화 : 033) 560-2950
 - F A X : 033) 560-2593

- 라. 기재사항 :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, 성명(단체명) 등 인적사항
- 마. 공청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,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고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합니다.

**「정선군 골프연습장 CCTV 설치·운영」
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**
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생년월일	
	주 소	전화번호	
행정예고(안)		수정제출(안)	사 유

정선군 골프연습장 내 CCTV 설치·운영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제 출 자

(서명 또는 인)

정선군수 귀하

정선군 공고 제2022-1492호

정선 군계획시설사업(노외주차장) 공사 완료 공고

정선군 고시 제2020-290호(2020. 12. 24.)로 최초 결정 고시된 “정선 군계획시설(노외주차장)”에 대하여 사업 완료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30일

정 선 군 수

- 1. 위 치 :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15-8번지 일원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가.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노외주차장)
 - 나. 명 칭 : 정선 군계획시설(노외주차장-15) 조성사업
-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결정		실시계획인가	비고
	세부시설명	면적(m ²)	금회 시행	
주차장	노외주차장	A=2,282m ²	A=2,282m ²	

- 4. 사업시행자 및 주소
 - 가. 성 명 : 정선군수(도시과)
 - 나. 주 소 :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- 5. 사업기간
 - 가. 착수일 : 2022. 6. 24.
 - 나. 준공일 : 2022. 12. 1.

정선군 공고 제2022-1493호

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사업(소로2-19호선) 공사 완료 공고

강원도 고시 제1986-67호(1986. 6. 7.)로 최초 결정 고시된 “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소로2-19호선)” 에 대하여 사업 완료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30일

정 선 군 수

- 1. 위 치 :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704-18번지 일원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가.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도로)
 - 나. 명 칭 : 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소로2-19호선) 개설공사(어린이놀이터 옆)
-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결정			실시계획인가	비고
	세부시설명	연장·폭원	면적	금회 시행	
도 로	소로2-19호선	L=115m, B=8.0m	A=920㎡	L=115m, B=8.0m	

- 4. 사업시행자 및 주소
 - 가. 성 명 : 정선군수(도시과)
 - 나. 주 소 :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- 5. 사업기간
 - 가. 착수일 : 2021. 11. 5.
 - 나. 준공일 : 2022. 7. 18.

정선군 공고 제2022-1495호

정선 군관리계획(고한리·사북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

정선군 고한읍·사북읍 일원 정선 군관리계획(고한리·사북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30일

정 선 군 수

1. 사업개요

- 가. 건 명 : 정선 군관리계획(고한리·사북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
- 나. 위 치 : 정선군 고한리·사북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
- 다. 면 적 :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서에 별도기재
- 라. 주요변경내용 :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 등에 관한 계획 변경

2. 공람목적 : 정선 군관리계획(고한리·사북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)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

3. 공람장소 및 기간

- 가. 공람장소 : 정선군청 도시과, 고한읍 행정복지센터, 사북읍 행정복지센터
- 나. 공람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이상(2022. 12. 31. ~ 2023. 01. 13.)

4. 군관리계획(고한리·사북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조서 : 실음 생략

5. 군관리계획(고한리·사북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도면 : 실음 생략

6.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: 정선군청 도시과, 행정복지센터(고한·사북읍)로 서면 제출

7. 기타사항 :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와 행정복지센터(고한읍·사북읍)에 비치하여

공람하고 있으며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(033-560-21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정선군 공고 제2022-1506호

2025년 정선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 및
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주민공람·공고

2025년 정선 군관리계획(재정비)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30일

정 선 군 수

- 1. 공람목적 : 2025년 정선 군관리계획(재정비)결정(변경)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
- 2. 위 치 : 정선군 행정구역 전역
- 3. 공람개요
 - 가. 2025년 정선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
 - 용도지역 결정(변경) 346건
 -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4건
 -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248건
 - 군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
 - 나.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내용 : 공람장소에 비치
- 4. 정선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 조서 및 도면 : 게재 생략(공람장소 비치)
- 5.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: 정선군청 도시과 및 읍·면 행정복지센터

- 6. 공람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이상(2022. 12. 31. ~ 2023. 01. 13.)

- 7.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: 공람기간 내 정선군청 도시과 및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서면 제출

- 8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과(033-560-21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본 공람·공고(안)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,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정선군 공고 제2022-1511호

정선(남면) 군계획시설사업(중로3-F1호선) 공사 완료 공고

정선군 고시 제2012-263호(2012. 8. 17.)로 최초 결정 고시된 “정선(남면) 군계획시설(중로3-F1호선)”에 대하여 사업 완료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30일

정 선 군 수

- 1. 위 치 : 정선군 남면 낙동리 28-1번지 일원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가.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도로)
 - 나. 명 칭 : 정선(남면) 군계획시설(중로3-F1호선) 개설공사
-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결정		실시계획인가	비고
	세부시설명	연장·폭원	금회 시행	
도 로	중로3-F1호선	L=619m, B=12.0m	L=63m, B=10.0m	

- 4. 사업시행자 및 주소
 - 가. 성 명 : 정선군수(문화관광과)
 - 나. 주 소 :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- 5. 사업기간
 - 가. 착수일 : 2022. 10. 21.
 - 나. 준공일 : 2022. 12. 23.